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5.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음.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를 운용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3조제2항제3호)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u><신설></u>	3. <u>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 조사</u>
3. ~ 5. (생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62